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232 제출연월일 : 2024. 7. 25.

부

제 출 자: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본문 중 "제35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3호, 제35조 및 제3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u><삭 제></u>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	<u><삭 제></u>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u> </u>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제36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부터 <u>제35조</u> 까지의 어느 하나에	<u>제34조</u>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3.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u>③</u>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
지 아니한 자
$2. \sim 4.$ (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
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7조	온천 정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제2항(과태료)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안 제37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3항(과태료)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00만원 이하 과태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7조	제1호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1 1	제2항(과태료)	과태료) 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37조	제1호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제3항(과태료)	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사안이므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용희	정태욱	박재연	임철언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용희	044-205-3523	kyh0119@korea.kr